

대전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1216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12167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1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변론 종결2021. 7. 23.

판결 선고2021. 8. 27.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169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87,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이 사건 2020.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18,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268,39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 '2014. 11. 28.'을 '2014. 11. 18.'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과도한 이자지급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양도세 5,000여만 원은 원고의

기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담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¹⁾).

나. 판단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와 피고가 부담할 양도세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상준

판사신지은

판사이효선

1) 피고는 2020. 12. 11.자 준비서면 제15쪽에서 이와 같이 추가상계항변을 주장하면서도 항소장에는 제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임금채권 13,500,000원만 추가공제한 24,268,394원(=1심 인용금액 37,768,394원-13,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의 위 추가상계주장을 예비적인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